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여행업자의 불법 노선운행 관련 유권해석 기준 안내

1. 귀 시·도 및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노선운행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해석 및 행정처분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버스운송업계의 혼란 및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부의 해석기준을 아래와 같이 전파*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여객운송사업의 질서 유지를 위한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주시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및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는 회원사 등 업계에 전파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 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집행할 책임을 진다

- 아 래 -

가.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운행계통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약한 계약상대방이 정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운행계통 설정금지 위반 여부 관련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약한 상대방이 운행계통을 정해도 운행계통 설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전세버스의 영업범위를 벗어남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법원 판례(2008두21294) 등을 근거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계약한 계약상대방이 운행계통을 정한 경우는 운행계통 설정금지 위반에 해당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해당 판례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2011.12)되기 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현재는 해당 판례를 근거로 판단할 수 없음

* (개정 전)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 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중략)...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후)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 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 (중략)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운행계통 설정 주체와 무관하게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운행계통대로 운행 할 수 없으며, 법제처(법령해석례, 16-0057, 2016.4.20.)도 동일하게 해석

<법제처 법령해석례(16-0057, 2016.4.20.) 일부 발췌>

법령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령에서 하나의 규정을 **본문과 단서로 나누어 규정하는 형식**은 본문의 규정 내용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을 단서로 정하는 것으로서, 단서의 규정은 본문의 내용을 제한하는 형식**이라고 할 것인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운행계통을 정하는 주체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를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를 두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자와 체결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는 운행계통을 정하고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는 주체와 상관없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되, 다만, 그 중 예외적인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단서의 취지는 본문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의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는 주체를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정하지 아니하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1년 6월 29일 대통령 제17261호로 개정되면서 통근·통학목적의 전세버스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이 처음 추가되었는바, 당시에는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2011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3473호로 개정되면서 그 규정방식을 같은 목 단서로 변경**하였바, 이와 같은 개정은 종전의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의 내용을 같은 부분의 본문에 대한 예시규정으로 이해한 사례(대법원 2009. 5. 15. **2008두21294 판결례**)가 있어 이러한 규정형식의 변경을 통하여 본문의 내용을 제한하고,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대상을 단서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정·열거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통령령 제1726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대통령령 제2347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참조).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행계통을 정한 경우에만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를 특별히 두고 있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고, 정기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업역의 구분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운행계통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사 등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정하는 경우에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여행자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관련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운송시설·숙박시설 등을 알선(중개)하거나 자기명의와 계산으로 제공 가능하나,

- 알선이 아닌 자기명의와 계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른 면허 취득이 필요*하므로, 여행업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득하여야 함

*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이 일정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할 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지 않는 한 각 법률에 따른 인허가 필요(대법원 2000두5159)

○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지위가 없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전세버스운송사업자 간의 운송계약을 단순히 알선한 것이 아니라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여행업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약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여행자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여행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므로,

- 여행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한 무면허 여객운송 및 동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명의이용 금지에 해당하여 동법 제90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임(대법원 판례 1994.7.29. 선고 93도1091 참고)

○ 아울러,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하여 여행업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의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취소 처분 및 동법 제90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임

4. 상기 내용과 관련해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여행업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및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에서는 관할 지자체 및 우리부로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해당 불법행위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버스정책과장), 부산광역시(버스운영과장), 대구광역시(버스운영과장), 인천광역시(택시운수과장), 광주광역시(대중교통과장), 대전광역시(버스정책과장), 울산광역시(버스택시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통과장), 경기도지사(버스정책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교통과장), 충청북도지사(교통철도과장), 충청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경상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대중교통과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주무관

최원재

시설사무관

정일웅

교통서비스정 전결 2024. 1. 26.

책과장

이주열

협조자

시행 교통서비스정책과-681

(2024. 1. 26.)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622호 교통서비스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29

팩스번호 044-201-5522

/ adu277@molit.go.kr

/ 비공개(5)